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. 9. 6 선고 2021나32477 판결 [공사대금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. 9. 6 선고 2021나32477 판결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동해시법원 2021. 7. 20 선고 2020가소3251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B

변론종결 2022. 7. 19.

판결선고 2022. 9. 6.

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21. 7. 20. 선고 2020가소 3251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4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당심에서 신청한 증인 C가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박재형, 판사 조영인, 판사 임세영